

##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1999. 06. 10.

제24차 개정 2022. 01.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따라 대학이념,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0.18]

**제2조(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 ①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한다.

1. 교양교과는 대학의 모든 학생이 전공 외에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교양필수 : 교양교과목 중 본교 인재상 및 교육목표, 역량별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고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개정 2021.07.15.)

나. 교양선택 : 교양필수 이외에 본교 학생으로서 본교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 역량별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고 선택이 가능한 교과목 (개정 2021.07.15.)

2. 전공교과는 학과(부)에서 해당 학과(부)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전공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전공필수 : 소속 학과(부)생이 갖춰야 할 전공 역량을 교육목표로 하고 모든 해당 학과(부)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개정 2021.07.15.)

나. 전공선택 : 소속 학과(부)생의 일부가 갖춰야 할 역량을 교육목표로 하고, 해당 학과(부)생의 선택이 가능한 교과목 (개정 2021.07.15.)

3. 학과(부)에는 전공과목 이외에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7.15.)

가. 계열(학부)기초 : 전공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학문의 기본개념과 탐구방법을 익히는 교과목 (신설 2021.07.15.)

나. 계열공통 :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 배정 이전에 이수하는 교과목 (신설 2021.07.15.)

③ 비교과 과정은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별도로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하고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FIND 핵심 역량 기반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함으로써 비교과 과정의 유기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FIND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체계(별표1)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9.09.11., 2021.07.15.)

1. 삭제(2019.09.11.)

2. 삭제(2019.09.11.)

3. 삭제(2019.09.11.)

4. 삭제(2019.09.11.)

5. 삭제(2019.09.11.)

6. 삭제(2019.09.11.)

④ 일반선택교과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교직 : 교원자격(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
2. 일반선택 : 교양교과 및 소속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 이외의 타 학과(부)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기타교과목 : 군사학 등

⑤ 편성과목이란 교과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을 말하며, 개설과목이란 편성과목 가운데에서 학년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8.10.18][조명변경 2018.10.18]

**제3조(편성방향)**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최신의 학문적 동향과 산업계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운영한다.

③ 전공 교과는 각 전공별로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된 전공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공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공역량 기반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한다.

④ 교양 교과는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식체계의 균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편성한다.

⑤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을 위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부개정 2018.10.18][조명변경 2018.10.18]

**제4조(핵심역량)** 상지 교육혁신 모델 FIND 역량지표의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용역량 : 취창업과 생활경제에 구체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
2. 통합역량 : 학습자 개인마다의 고유한 융복합 능력을 키우는 통섭교육 중심
3. 소통역량 : 글로벌 표현역량과 지역협동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교육 중심
4. 자기발견역량 :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는 자기동기 발현교육 중심

[본조신설 2018.10.18]

**제5조(교과과정 개발 및 환류)** ① 전공교과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그리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각 학과(부)는 소속 학과(부) 및 전공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성에 맞게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을 설정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2. 각 학과(부)는 역량기반 전공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한다.

3. 역량기반 전공교과과정은 학과(부)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과 연계되도록 설정한다.

4. 각 학과(부)의 전공역량은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설정하여 작성한다.

가. 산업계 및 사회 요구 분석, 내외 환경 분석, 학문 동향 분석,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 반영

나. 진로 분야에 대한 직무 분석 결과 반영

5. 각 학과(부)는 전공의 체계적인 학문계통도와 전공 내 진로 분야별 학습로드맵을 설정한다.

6. 전공교과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가. 전공교과과정에 대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교과과정 개편 시 반영

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과정 개편 및 운영

다.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전공교과목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7. 전공교과과정의 환류를 위해 학과(부)에서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학과(부)별 교원 워크숍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과정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8. 모든 학과(부)는 교과과정개발보고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개정 2020.08.27.)

9. 교과과정개발보고서는 수요도 요구 조사,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전공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 실적, 전공교과과정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교양교과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발한다.

1.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교양교과과정을 개발하며, 각 교과목 별로 4대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설정한다. 설정된 연계성은 수업계획서 등에 표시한다.
2. 교양교과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환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 가. 교과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교과과정 개편 시 반영
  - 나.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편 및 운영
  - 다. 설문조사 및 요구분석을 통해 교양교과목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반영
3. 교양대학은 교과과정개발보고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27.)
4. 교과과정개발보고서는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교양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 실적, 교양교과과정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10.18]

**제6조(교육과정 적용기준)** ① 모든 학생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연도에 필수로 지정된 학점은 원칙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연도에 적용받았던 교양필수, 계열(학부)기초 및 전공필수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축소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③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 학점, 적용 기준, 특이사항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8.] [조명변경 2019.09.11.] [전부개정 2019.09.11.]

**제7조(위원회 설치)**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과위원회, 전공교과위원회,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비교과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9.11.)

[전부개정 2018.10.18]

**제8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전임교원 및 지역의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연구처장 및 미래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9.06.25)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3. 산업계 및 사회요구 반영 교과과정 편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4. 교양교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양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교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발주사항 및 연구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9조(교양교과위원회)** ① 교양교과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양대학장과 미래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교양대학 일반교원 2인, 교양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별 일반교원 1인, 이러닝교양교과 담당교원 2인 이내 및 지역사회와 덕망 있는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양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9.06.25)

② 교양교과위원회는 교양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교양교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과의 방향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양과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교육 수요자 요구 또는 만족도 조사 포함)
3. 교양교과 과정의 영역 구분, 개설학기 구분 등 교양교육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양교과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10조(전공교과위원회)** ① 전공교과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두며, 위원은 학과(부)장을 포함하여 학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공교과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③ 전공교과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주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 교과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년별, 학기별 전공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전공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학과(부) 전공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

**제11조(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 ①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학과(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학과(부) 전임교원, 산업체인사 및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부) 교과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부)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학과(부)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
2. 학과(부) 교과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
3. 학과(부) 교과과정 성과 분석 및 평가
4. 기타 학과(부) 교과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전부개정 2018.10.18][조명변경 2018.10.18]

**제12조(각 위원회 임기 및 운영)**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위원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위원회, 전공교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교무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⑥ 과목명 및 학기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전부개정 2018.10.18]

**제13조(종합개선 보고서)** 교육연구처장은 학사관리 항목 분석결과를 반영한 종합개선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0.08.27.)

1. 학과(부)장은 종합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2. 단과대학장은 소속 학과(부)장이 제출한 종합개선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3. 제2호에 따라 확인한 결과 관련 기본 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개정 2020.08.27.)

4. 교육연구처장은 각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종합개선보고서의 제출 결과를 점검하고 교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교내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개정 2019.06.25)

[전부개정 2018.10.18][조명변경 2018.10.18]

**제14조(비교과과정 편성 원칙)** ① 비교과과정은 중장기발전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본 계획과 교육혁신 계획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비교과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9.09.11.)

② 비교과과정 편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외부 환경 및 여건 분석, 프로그램 성과 분석, 수요 조사, 타 대학 벤치마킹 등 조사와 분석 결과 반영
2. 역량 진단을 통한 수준별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3. 교과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4. 학습 저성과자 및 학습소수자에 대한 배려
5. 비교과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확대

[본조신설 2018.10.18]

**제15조(비교과운영위원회)** ① 비교과운영위원회는 미래교육혁신원장, 인재개발원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학생행복상담센터장, 국제어학원장, 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학생대표 또는 산업체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01.17)

②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비교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1.17.)

1. 비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수립
2. 비교과과정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심의
3. **학습역량, 취·창업, 학생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과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④ 비교과운영위원회는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0.08.27.)

[본조신설 2018.10.18.] [전부개정 2020.05.14]

**제16조(비교과과정 개선 노력 및 환류)** ①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의견 수렴
2.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작성
3. 개선계획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

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장은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차기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장은 각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학생역량강화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10.18]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8.10.18][조명변경 2018.10.18]

##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제5조(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5.5.31)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제1항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95, 2007.6.4)

이 규정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14, 2010.10.28)

- ①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영역의 이수구분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3, 2011.1.18)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80, 2012.7.17)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 2015.01.05)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1, 2015.06.05)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9,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99,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1, 2017.05.12)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33, 2018.10.18)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71, 2019.09.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교육과정의 구분 및 정의) 제3항, 제6조(교육과정 적용기준), 제7조(위원회 설치), 제14조(비교과과정 편성 원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8, 2020.05.14)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8, 2020.08.27)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739, 2020.11.2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11, 2021.07.15.)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0, 2022.01.17.)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9.09.11.) (개정 2021.07.15.)

## FIND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과정 분류 체계

구분	꿈을 찾아가는 FIND 비교과 과정			
핵심역량	응용역량	통합역량	소통역량	자기발견 역량
프로그램내용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학과 또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지도, 전공 전문성 및 현장적용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의 교육활동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 개인의 고유한 융복합 능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비교과과정의 교육활동	지역공동체부터 글로벌 공동체까지를 대상으로 사회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력 및 사회 봉사를 위한 비교과 과정의 교육활동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심리적 건강 및 인·적성 상담 지원, 학생 개인 역량 강화, 취미 및 특성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비교과 과정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예시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상담 및 설계 프로그램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학술 정보 활용 프로그램 -글쓰기 능력 및 사고력 함양 프로그램 등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지역 및 사회 봉사 지원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기 및 취미 동아리 등